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97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 ③ (생 략)</p> <p>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 ----- ----- ----.</p>